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경제부지사 운영, 한시기구 조정, 세종사무소 운영,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기구조정

- 정무부지사 → 경제부지사(안 제4조)
- 바이오밸리추진단(한시) → 바이오산업국(안 제5조 및 제13조)
- 충청북도서울사무소 → 충청북도세종사무소(안 제56조의2)
- 옥천소방서 신설(별표 2)

□ 분장사무 조정 등

- 행정부지사,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(안 제4조)
 - 행정부지사 정무 기능 신설
 - 경제부지사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 신설 등
- 균형건설국 사무 조정(안 제12조)
 - 혁신도시 관련 사무 삭제(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)
- 소방본부 사무 신설(안 제14조)
 -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 -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 -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- 충청북도세종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사무 조정(안 제56조의2, 제56조의4)
 - 관할구역 조정 : 수도권 → 세종특별자치시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내 → 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
 - 국회·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·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
-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 지원 사무 신설(안 제62조)
 -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
-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(별표 2)
 - 청주서부소방서, 영동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및 옥천소방서 신설

□ 그 밖의 개정내용

○ 행정기구 설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8조)

－ 자치연수원 설치 근거법령 조항 정비

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」 제5조 →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

○ 타 조례 개정

－ 상임위 소관 국 명칭변경(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)

－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국 명칭변경(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)

－ 제명 변경(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)

－ 행정부지사,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타 조례 개정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 운영, 한시기구 조정, 세종사무소 운영,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,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,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, 옥천소방서를 신설하는 등 기구조정과 기구조정에 따라 행

정부지사 정무기능신설, 경제부지사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 신설 등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 조정, 소방본부 사무 신설, 충청북도세종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및 사무 조정, 소방서관할구역 변경 등과

자치연수원 설치근거 법령의 조항을 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」 제5조에서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로 변경하고, 조례개정에 따라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